

의안번호	2209919
의 퇴 인	정희용의원
회 답 일	2025.6.13.
추계번호	25B2389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3항(보전산지의 변경·해제)	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.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·제2호·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,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(이하 “산지특성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음(제3항) 1.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임업용산지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하여 입목이 소실되거나 고사하는 등 임업생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6조제3항(보전산지의 변경·해제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업용산지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하여 입목이 소실되거나 고사하는 등 임업생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,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(이하 “산지특성평가”)를 실시할 수 있도록

하는 내용임

- **(보전산지 지정 해제)**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1)에 따라, 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지방산림청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산지특성평가의 결과를 고려해야 함
- **(산지특성평가 시행 주체)** 동법 시행령 제52조제4항2)에 따라,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,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산지특성평가를 위임받아 실시하고,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위임받아 실시함

[표 1] 산지특성평가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현황

구 분	고시	
	필지수	면적(m ²)
합 계	51	130,695
2019년	4	3,026
2020년	17	19,499
2021년	15	43,140
2022년	0	0
2023년	7	35,936
2024년	8	29,094

자료: 산림청

- 산림청에 따르면,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위한 산지특성평가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, 산지특성평가 실시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**(비용 부담 주체)** 산림청에 따르면,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산지특성평가 용역을 발주할 경우, 산지특성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**(산지특성평가 비용)** 산림청에 따르면, 산지특성평가의 용역 비용은 필지의

1) 제3조(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)

- ① 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지방산림청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, 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(이하 “산지특성평가”라 한다)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2) 제52조(권한의 위임 등)

-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,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. 다만,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
2.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

특성, 면적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, 표준화된 단가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음
 - 다만, 산지특성평가 용역 사례로 2023년에 경기도 하남시가 방아다리 1지구 (2.6815ha)를 대상으로 용역을 통해 산지특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, 용역비용은 804만원이었음

- 다만, 개정안에서 보전산지 지정해제 요건으로 규정하는 ‘임업용산지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하여 임목이 소실되거나 고사하는 등 임업생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산지특성평가 실시 수요를 현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보전산지 지정해제 절차

구 분	주요 법령 등 내용
지정해제 신청 (기초 지자체, 관리소 → 광역지자체, 지방산림청)	○ (법적근거)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－ 법 제4조에 따른 지정요건, 법 제6조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, 법 제8조에 따른 협의,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(신고) 후 목적사업 완료 여부 등 검토 ○ (신 청 자) 시장·군수·구청장, 국유림관리소장
↓	
검토 및 신청 (광역지자체, 지방산림청 → 산림청)	○ (법적근거)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－ 기초지자체장, 국유림관리소장의 신청에 대하여 법령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 ○ (검 토 자) 광역지자체장, 지방산림청장 －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만 산림청으로 신청
↓	
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(산림청)	○ (법적근거)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－ 신청이 타당한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상정, 법률적 요건 미충족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정보시스템으로 반려 ○ (심의기관) 중앙산지관리위원회
↓	
결과 통보 (산림청 → 광역지자체, 지방산림청)	○ (법적근거)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－ 심의결과 원안의결이면 산지 재구분 및 고시, 부결/심의보류인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에 부결 사유 또는 보류사항 통보

자료: 산림청